#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7

발의연월일: 2024. 6. 27.

발 의 자: 김선교·구자근·김성원

김정재 · 김상훈 · 이헌승

박수민 · 최수진 · 박준태

박충권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,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.2만원에서 37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음.

그런데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'부양의무자 기준'은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(부모, 자녀, 사위, 며느리)까지 포함한 가족들 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,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가 부양의무자와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 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 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(안 제14조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생활수준을"을 "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구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"을 "가구원은"으로 한다.

제14조의3제1항 중 "부양의무자에"를 "가구원에"로, "부양의무자의"를 "가구원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부양의무자가"를 "가구원이"로 한다.

제14조의4제1항 중 "부양의무자가"를 "가구원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부양의무자의"를 "가구원의"로 한다.

제63조 전단 중 "부양의무자가 없는"을 "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없는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생활조정수당) ① 다음 각	제14조(생활조정수당) ①
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<u>생활수준을</u> 고려하여 생활조정	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
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u>&lt;후단</u>	<u>으</u>
<u>신설&gt;</u>	<u>가구원의 범위</u>
	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14조의2(생활조정수당 지급 신	제14조의2(생활조정수당 지급 신
청) ① (생 략)	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	②
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	
본인과 그 <u>부양의무자(부양의</u>	<u>가구원은</u>
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	
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	
<u>같다)는</u> 다음 각 호의 자료 또	
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	
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4조의3(조사・질문 등) ① 국	제14조의3(조사ㆍ질문 등) ①
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 수	

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 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 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 (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 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그 부 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 류나 그 밖에 소득 •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의무자의 주거,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 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 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 ②·③ (생 략) ④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

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 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· 질문 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

<u>7</u> }
<u> 구원에</u>
<u>가구</u>
원의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<b>4</b>
가구원이
<u> </u>
<u> </u>

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.

#### ⑤ (생략)

제14조의4(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 국가보훈처장은 「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 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부 양의무자가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 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기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. 이 하 같다)의 장에게 금융정보・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 당수급자와 그 <u>부양의무자의</u>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금융실

· ⑤ (현행과 같음)
제14조의4(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
<u>가</u>
<u> 구원이</u>
②
가구원의

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③ ~ ⑦ (생략)

제63조(양로지원)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(자녀는 제외한다)으로 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 세 이상의 여성(전상군경, 공상 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 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 성은 60세 이상,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) 중 부양의무자 가 없는 자(부양의무자가 있으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 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 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 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 로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공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63조(양로지원)
<u>부</u> 양의무자
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
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
<u>이하 같다)가 없는</u>

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.	